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12. 17.(금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장순재, 사무관 민인홍, 주무관 이왕근 ·☎ (044) 201-3887	
	한국도로공사 영업처	담당자	·부장 이익재, 차장 김재동 ·☎ (054) 811-2226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2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9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상습 과적·적재불량 화물차 "통행료 심야할인" 제외

-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*을 제외한다고 밝혔다.

* 심야시간(21~06시)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~50% 통행료를 할인 중

-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('20.12.29)에 따른 것으로 과적·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*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
* 법규위반 차량현황('20년 기준): (과적) 44,002대 (적재불량) 7,675대



-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(과적), 도로교통법 제39조(적재불량·화물 고정)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

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*
되며,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.

*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
하고,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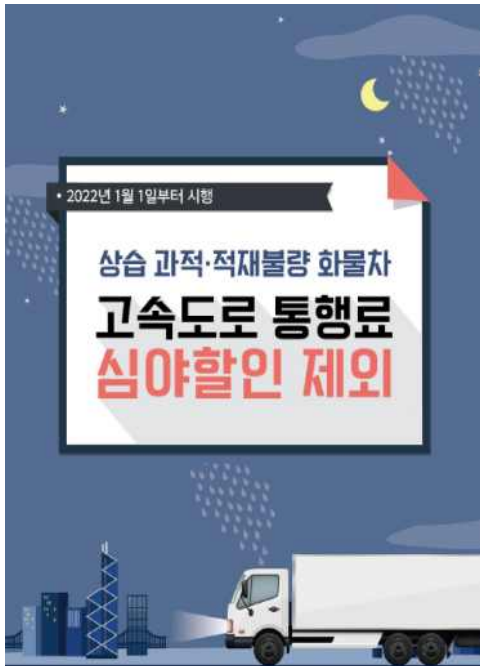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“심야할인 제외”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(先) 할인
하되, 과적·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(先) 할인받은
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.

○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
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(www.hipass.co.kr)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
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“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
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·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
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
민인홍 사무관(☎044-201-3887), 한국도로공사 김재동 차장(☎054-811-2226)에게 연락
주시기 바랍니다.



01 화물차 심야할인제도

- 목적 :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 물류비용 절감
- 적용 : 총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차등 할인

심야시간 이용비율	100-70%	70-20%
통행료 할인율	50%	30%

* 심야시간 : 21시~익일 06시, 개방식은 통과시각 기준 50% 할인

- 금액 : 연간 약 900억 수준
* ('18) 801억 → ('19) 878억 → ('20) 906억

02 과적·적재불량 화물차 교통안전 위협

과적·적재불량 사고사례



운행제한(과적) 위반



최근 5년간 ('16~'20)
- 20년 도로파손비 876억원
- 최근 5년간 도로파손비용 3,484억원 (연평균 693억원)

적재불량·낙하물방지조치 위반



최근 5년간 ('16~'20)
- 낙하물 사고 206건 (사망2, 부상 21명)
- 낙하물 수거 1,273천건 (연평균 255천건)

03 「심야할인 제외」 제도 안내('22.1~)

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승 과적·적재불량 차량의 통행료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합니다.

- 대상 : 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의 차량

대상법규 : ① 도로법 제77조 1항(차량운행제한)
②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(적재불량)
③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(낙하물방지 조치)
횡수신정 : 동일운전자+동일차량+동일법규 시 횡수 산입 단, 2022년 1월1일 단속실적부터 산입

- 기간 :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
3회 이상 위반 시 각 6개월씩 가산

기간가산 : 연 3회 위반 시 [3+6 = 총9개월] 제외

- 방법 : 통행 시에는 할인적용, 사후 심사를 통해 일반요금(할인 받지 않은)과의 차액을 고지

적용예시

운전자甲이 A차량을 운행하여 동일법규를 3회 (2022년 1월1일, 3월1일, 5월1일)위반시

→ 22년 3월2일~6월1일(3개월), 6월2일~12월1일(6개월) A차량 총 9개월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

※ 본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 ※

1 운전자甲이 A·B차량을 운행 (동일차량 아님) 2 운전자甲·乙이 A차량을 운행 (동일운전자 아님)

3 상이한 법규 위반시 (동일 법규 위반 아님)

04 이의제기

- 고지 내역 중 정당한 할인(타인의 운전 등) 임을 소명하여 정상할인 처리 가능
- 아래 증빙서류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및 통행료 홈페이지(http://www.hipass.com.kr)를 통해 제출

구 분	제출서류
기본서류	▶ 이의제기 신청서 (영업소 및 홈페이지구비)
화물차량	▶ 위·수탁계약서, 영도영수계약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확인서 등
	▶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, 작업계획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확인서 등
증빙서류	▶ 작업일지, 운행일지, 배차현황표, 운전보험 등록 확인서 등

제출서류 : 기본서류(이의제기신청서) + 증빙서류 중 택 1

05 기대효과

-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향상
- 화물차 위험 운행 근절
- 도로·시설물 파손 최소화

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

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로 문의주세요